

	창업지원단규정(폐지)	규정번호	4-1-9
		제정일자	2018.03.01.
		폐지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산학협력단 (창업보육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창업지원단은 안산대학교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 정관과 대학 부설 창업지원단(이하“지원단”이라 한다.)의 운영규정에 따라 본교 학생, 교직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지원단은 창업보육센터와 창업교육센터 및 향후 조직될 창업 관련 센터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기능을 갖는다.

제3조(사업)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(예비)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2. 학생 및 교직원의 창업 지원
3.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
4. 지원단 고유목적에 부합되는 투자 사업
5. 그 외 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 구성)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둔다.

1. 단장
2. 전담 매니저
3. 지원단 운영위원회
4. 창업협력위원회

제5조(단장) ①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.

제6조(전담인력) 창업지원 전담매니저 2인은 지원단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예산의 집행) ① 단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고, 총장이 산학협력단 회계팀에 지출업무를 위탁하여 집행한다.

②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집행 결재에 관한 전결규정을 둔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단장과 매니저를 포함하여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교직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
1. 지원단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지원단 운영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각종 추진사업의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기업체 입주심사 등 지원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.
5. 지원단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

제10조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창업협력위원회

제11조(창업협력위원회) ① 지원단과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타 창업지원단과 각종 유기적인 창업활동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창업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창업협력위원회는 단장, 매니저를 포함하여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교직원과 유관기관 실무 관계자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협의사항) 창업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창업지원 협동체제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2. 창업지원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
3. 창업지원 공동사업 세부 추진내용
4. 기타 기관 간 창업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

제5장 감사 및 기타사항

제13조(감사) 지원단은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지원단 지원법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로 폐지한다.